

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18. January _ Vol. 72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NEWS 식품안전 주요 NEWS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결과

- 425곳중식품위생법 위반 20곳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5곳) ▲건강진단 미 실시 (8곳) ▲보존식 미보관 (1곳)이었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벌칙
무신고·등록 영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영업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강진단 미 실시,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11일)



CESCO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3,021가지의
도달 식품위생 솔루션

🏠 세스코 식품안전 위생진단 서비스

1 Step

FOOD SAFETY CONSULTANT

외식업장의 사업을 돕는
식품안전 컨설턴트가
찾아갑니다



2 Step

3,021 🔍

조리시설의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3,021가지의 기준으로 철저히
진단합니다

3 Step

UPGRADE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4 Step



세스코의 다양한 업장홍보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먼저 찾는
깨끗한 맛집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식약처, 이유식 용어를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점검 실시

- 18년 1월, 제품포장(표시) 및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용도식품이 아니면서 이유식 용어를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점검을 '18년 1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제품명으로 아기, 맘스, 얌얌, 까까, 베이비 등 사용 ▲섭취시 주의사항으로 12개월 이하의 월령을 표시 ▲제품 활용법, 용도를 표시함에 있어 영아기 이후의 제품이라는 표현, 분유 떼 후 또는 돌 지난 후 등 표현 ▲광고 문구로 동일 브랜드의 특수용도식품과 일반식품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이트 또는 ‘세스코식품안전’ 사이트(▶[자료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식품산업협회, 1월 11일)

벌꿀 제품, 품질관리 강화 필요

- 일부 제품은 품질·안전 관리가 필요하고 1세 미만의 영아 및 소비자에 정보 제공 시급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벌꿀 30개 제품(국산 15개, 수입산 15개)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일부 제품의 경우 품질·안전 관리가 필요하고 1세 미만 영아의 벌꿀섭취 금지 및 사양벌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대상 벌꿀 30개 중 2개 제품은 기준(80mg/kg 이하)을 각각 1.8배, 3.1배 초과하여 품질 상태가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6개 제품은 국내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Codex 권고기준(40 mg/kg 미만, 열대지역 80 mg/kg 미만)을 초과했다. 국내 및 Codex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국내산이 15개 중 2개, 수입산이 15개 중 6개로 운송·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입량이 많아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수입산 제품의 특성상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꿀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 오염으로 발생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신경 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위해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 30개 중 19개 업체만이 제품에 영아 섭취금지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명기했다. 영아가 벌꿀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벌꿀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문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 제품은 사양벌꿀임에도 제품명에 “잡화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동 제품들을 잡화꿀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사양벌꿀 제품은 주표시면에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고시 시행일('20.1.1.) 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판매 가능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벌꿀의 품질·안전관리 및 사양벌꿀 관련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표시 의무화 및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12월 28일)



표시 검증/작성 서비스



‘표시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

- 최신 정책, 법령 관리 통한 최적의 ‘제품 표시’ 유지
- 잦은 인력 변화에 따른 법규 리스크 관리 역량 유지
- 명확한 원인 파악을 통한 대응논리 및 소명절차 지원
- 전문교육, 영양성분 분석까지 ‘One-stop’서비스 연계

【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솔루션 제공

【 현장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현장방문, MD당 20제품

【 표시 작성 】

- 표시사항, 영양성분표 작성 및 솔루션 제공

【 Online/광고물 검증 】

- 셀링포인트/체험기/댓글 등 허위,과대 광고 검증

제품 출시 이전부터 이후까지 모든 표시 관련 법규 기반의 체계적인 제품표시 리스크 관리

「보고대상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18.1.10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 발견사실에 대한 보고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신청 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이물 등 증거제품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이의)신청 기한을 조사기관으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며,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서류 확인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등이다.

이번 일부 개정되는 고시는 '18.1.10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월 10일)

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대형유통업체가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행위에대한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수있는사례 등담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안을 마련하여 1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며,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여,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먼저,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하여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반품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고 전부는 물론이고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며 거래의 형태와 특성,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효과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가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제1항 각호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사유 9가지를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반품이 허용되는 사례와 허용되지 않는 사례 등이 서술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것이며,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1월 10일)

HACCP 컨설팅 서비스



신뢰성
다수의 정부 인증 보유



고객 지향
고객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최적의 결과물 도출



전문성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 및
컨설팅 실적 보유

- 식품 HACCP 컨설팅 등록 업체 (식약처)
-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록 업체 (식약처)
-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식약처 제10호)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식약처 제4호)
- 책임 컨설턴트 및 자문단 운영
- 품목 유형별 특성을 반영, 최적의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
-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결과물 도출
- 컨설턴트 전원 상근 인력으로 책임감 있는 컨설팅 수행
- 고객 눈높이 반영 교육 및 지도 수행
- IPM(해충방제) 노하우 접목을 통한 시설 진단

⚠️ 주요 단속 정보

'18년 1~2월 점검 일정

점검명	점검 대상	점검기간
○ 굴, 광어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지도, 점검	부적합 이력 양식장, 위, 공판장 및 집하장 등	11.20~'18.1월
○ 설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 수산물	1.25 ~ 2.2
○ 발렌타인 데이 대비 점검	초콜릿, 과자류(캔디류) 등 제조/소분/판매 업체	2.5 ~ 2.9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1차)	인터넷 등 판매 제품	2.7 ~ 2.9
○ 영유아식 표방(표시, 광고) 제조, 판매 점검	이유식, 영유아곡류조제식 등	2.19 ~ 2.21
○ 단순처리 농,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1차)	절임배추, 꽃감, 과메기, 멸치 등	2.22 ~ 2.28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 NEWS

식품 및 축산물 표시개정에 따른 포장지 사용 연장

- '18.1.1 시행되는 식품 및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포장재 재고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 수급업계의 판매 부진 등으로 기존 포장재 재고가 남아 있으나 스티커 부착의 어려움이 있어 스티커 처리없이 동 포장재를 사용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다.

해당 사항은 업체가 그 사실(표시내용, 포장재 양, 포장재 소진시점 등)을 명시하여 관할 신고관청에 신청하는 경우 '18.6.31까지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스티커 수정 없이 '18.6.31' 까지 기존 포장재 사용	스티커 수정하여 기존 포장재 사용
1)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6-45호, '16.6.13 및 제2016-99호, '16.9.9)의 개정사항 2)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제2016-75호, '16.7.29)의 개정사항 * 주요사항: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으로 구획화, 글자크기 10포인트 이상, 영양성분 표시 단위(일회 제공량→총내용량 등) 및 순서(나트륨, 당류 우선 표시), 당류 일일영양성분 기준치(100g으로 신설)	1) 포장지에 '천연첨가물' 표시된 경우 *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천연첨가물'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표시기준의 '천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천연 표시 불가' 2)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이트 또는 '세스코식품안전' 사이트(▶[자료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월 4일)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food.co.kr

HACCP 정기 과정 (2/21, 3/14)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2/21, 3/14)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HACCP 팀장 과정 (2/22~23, 3/15~16)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소규모 HACCP 팀장 과정 (3/29~30)

- 신규로 HACCP인증을 위한 법정 교육(소규모 사업장 특화)
- 기준서 직접!작성 부터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식품 전문 교육



HACCP 재인증&사후심사 대응 (3/28)

- 재인증/사후심사를 대응하기 위한 주요tip 제공
- 위해요소분석, 검증 중점 이론교육에서 현장 실습까지!

식품공장 해충 방어와 이물분석 (3/27)

- 식품공장 유래 주요 해충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어법 제공
- 주요 이물의 동정방법과 취약포인트 개선방안

표시연관 법규와 식품표시실습 (3/13)

- 표시 연관 법규를 한눈에 소개(법, 공전, 기타 법규)
- 표시기준을 이해하고 표시 근거와 영양성분표, 표시를 직접! 작성하고 오류사항도 찾아보는 실습을 한번에!

'환급'

'환급'

'환급'

'18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비전

“국민이 참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식품안전”

목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수행”



핵심 전략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위해요인 검사·관리 강화
 - * 수산물·유제품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수립
- 식품제조업체 사용 원료제품 관리 강화 및 HACCP 확대
- 해외제조업소 현지 실사 및 통관검사 강화
- 유통업체 관리 강화,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및 이력추적대상 품목 확대
- GMO 등 식품표시 강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재평가 확대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 가정간편식, 배달앱, 온라인 판매제품 등 소비트렌드 반영 검사 강화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급식의 공공성 제고
- 어린이 식품 판매환경 개선 및 영양관리 지원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

-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등 식품 선택권 보장
- 식품사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도입 추진
 - *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표시 전면시행
- 식중독 원인 미생물 위해평가 및 식중독 원인체 유전자 DB 확보
-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식품안전정보 지속 제공

'18년 연간 지도.점검 추진 일정 _ 상반기

월	점검명	대상	점검기간
1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스키장,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조리.판매	'17.12.28 ~ 1.4(5일)
	○ 설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	1.25 ~ 2.2 (7일)
2	○ 발렌타이데이 대비 점검	초콜릿, 과자류(캔디류) 등 제조.소분.판매	2.5 ~ 2.9 (5일)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1차)	인터넷 등 판매 축산물의 허위표시 및 광고	2.7 ~ 2.9 (3일)
	○ 영유아식 표방(표시.광고) 제조.판매업체	이유식, 영유아곡류조제식 등	2.19 ~ 2.21 (3일)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1차)	절임배추, 꽃감, 과메기, 멸치 등	2.22 ~ 2.28 (5일)
3	○ 봄 신학기 대비 합동점검	학교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 판매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	3.2 ~ 3.12 (7일)
	○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업체 점검	과자류, 김치류 등 식품제조업체 / 인삼, 비타민 등 건기식제조업체(1차)	3.5 ~ 3.9 (5일)
	○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 트럭 등 조리.판매	3.19 ~ 3.23 (5일)
	○ 검사명령제 이행여부 등 위반업체 점검	검사명령제 대상업체, 수질검사 부적합 업체 등	3.19 ~ 3.23 (5일)
	○ 수산물 인위적 증량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점검	시세차익을 노린 냉동수산물 얼음막(글레이징)	3.26 ~ 4.3 (7일)
4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합동 교차점검	도시락,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제조.판매	4.2 ~ 4.6 (5일)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점검(1차)	약령시장 내 농.임산물 식품판매업체	4.2 ~ 4.6 (5일)
	○ 탁주 제조업체 점검		4.9 ~ 4.13 (5일)
	○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집단급식소(청소년수련원 시설 등), 김밥, 도시락제조업체 등	4.9 ~ 4.17 (7일)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수거검사		4.16 ~ 4.24 (7일)
	○ 가정의달 대비 건강기능식품제조.유통업체 합동점검	인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소제품 등	4.16 ~ 4.20 (5일)
	○ 가정의달 대비 뷔페업소 등 식품접객업체 점검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대형음식점 등	4.23 ~ 4.27 (5일)
	○ 어린이날 대비 합동 점검	학교 매점 등 조리.판매업체	4.23 ~ 4.30 (6일)
5	○ 음료류 제조업체 허위표시 및 광고 점검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음료 제조·판매업체 등	5.8 ~ 5.11 (4일)
	○ 주류원료인 주정 제조업체 점검		5.9 ~ 5.11 (3일)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1차)	김치류, 소스류 등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5.14 ~ 5.18 (5일)
	○ 수산물 양식장 및 유통판매업체 등 점검(1차)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양식장 및 판매업체	5.14 ~ 5.23 (7일)
6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2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6.4 ~ 6.11 (5일)
	○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아이스크림, 햄, 소시지 등 즉석섭취가공품 등	6.7 ~ 6.15 (6일)
	○ 프랜차이즈 원료 제조업체 점검	빵류, 면류, 식용유지류, 조미식품(소스류 등) 등	6.11 ~ 6.20 (7일)
	○ 위생취약 분야 조리.판매업체 점검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애견.야생동물카페 등	6.18 ~ 6.22 (5일)